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,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, 보훈보상대상자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수송시설의 이용 등 신규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221호, 2023. 1. 17. 공포, 2023. 7. 18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 및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7조의2 신설)

나.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와
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
함(안 제67조의3, 안 제67조의4, 별표 9의3 신설)

다.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법 제67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함
(안 제80조의2 제1항)

라.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(제81조제2항 및 제4항)
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에
가산하는 이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국세환급가산이율을
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

2) 환수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은
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
하되, 연체금 부과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

마.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(제81조제5항 및 제6항)

납부의무자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
하는 경우에는 최대 60회 이내에서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
게 할 수 있도록 함

바.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
(별표9의3)

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상속인에 대한 보훈급여금등 환수처분을 위해
필요한 경우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정보 및 「상
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의 제목 중 “의료지원”을 “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”으로 한다.

제5장에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7조의2(부양능력이 없는 경우) ① 법 제54조2 전단 및 제54조의3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”란 각각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부양의무자가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
2. 부양의무자가 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,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,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,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
3. 부양의무자가 취학·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7조의3(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

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. 다만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.

1.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

2. 법 제54조의4제1항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

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법 제54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「한국철도공사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.

제67조의4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54조의5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.

1.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

2.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

3.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

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
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
4.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
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
명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
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.

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
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에 따
른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80조의2제1항 중 “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”를 “법
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”으로 한다.

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1조(보훈급여금등의 환수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
따라 보훈급여금등과 그 이자(이하 “환수금”이라 한다)를 환수 처분
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처분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
받은 사람(상속인을 포함하며, 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
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의무자”라 한
다)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
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.

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 대상 보

환급여금등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보환급여금등”이라 한다)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

1. 이자율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

2. 기간: 환수보환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. 다만,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환수보환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수보환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.

③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.

④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(이하 이 조에서 “연체금”이라 한다)은 환수금 납부기한(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,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)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수보환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

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, 회당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,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.

1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20회
2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회
3.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: 60회
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,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.

제82조 중 “법 제68조제3항”을 “법 제68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83조의2 중 “별표 9의2와”를 “별표 9의3과”으로 한다.

별표 9의2를 별표 9의3으로 하고, 제7호의2, 제19호의2,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

19의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에 관한 정보

21의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

21의3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

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9의2]

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(제67조의4제2항 관련)

시설의 종류	감면율(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)
1. 고궁 및 능원	100분의 100
2. 국공립 공원	100분의 100
3. 독립기념관	100분의 100
4. 전쟁기념관	100분의 100
5.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	100분의 100
6. 국공립 수목원	100분의 100
7. 국공립 자연휴양림	100분의 100
8. 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은 제외한다)	100분의 50
9. 국공립 공공체육시설	100분의 5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장 <u>의료지원</u> <신 설>	제5장 <u>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</u> 제67조의2(부양능력이 없는 경우) ① 법 제54조2 전단 및 제54조의3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”란 각각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부양의무자가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. 부양의무자가 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된 자,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,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,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. 부양의무자가 취학·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장관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<u>제67조의3(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. 다만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.</u> <u>1.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</u> <u>2. 법 제54조의4제1항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③ 법 제54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「한국철도공사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. 제67조의4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54조의5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. 1.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.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.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
현행	개정안
라 한다)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「주택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----- ----- -----.
<u>제81조(보훈급여금등의 환수) ①</u>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(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)에게 보훈급여금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	<u>제81조(보훈급여금등의 환수) ①</u>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과 그 이자(이하 “환수금”이라 한다)를 환수 처분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처분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(상속인을 포함하며, 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의무자”라 한다)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환수금을 내야 한다.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	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자는 환수대상 보훈급여금등(이하 이 조에서 “환수보훈급여금등”이라 한다)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나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내야 하며, 반납금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 영수확인 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	1. 이자율: 「국세기본법 시행

현행	개정안
<u>에게 보내야 한다.</u>	<u>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</u> <u>2. 기간: 환수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. 다만,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환수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수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로 한다.</u> <u>③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.</u> <u>④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(이하 이 조에서 “연체금”이라 한다)은 환수금 납부기한(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, 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</u>

현행	개정안
	<u>일을 말한다)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채납된 환수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</u> <u>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, 회당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</u>

현 행	개 정 안
	으로 하되,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. 1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20회 2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회 3.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: 60회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,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기한은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한 날로 한다.
제82조(결손처분)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	제82조(결손처분) ----- <u>법 제68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제83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)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<u>별표 9의2</u> 와 같다.	제83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) 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9의3과</u> 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
보상정책과	(044) 202 - 5420
복지정책과	5611
복지운영과	5631
생활안정과	5658